

# 고문서 정리(整理)에 대한 기록학적 연구

- 새로운 고문서 정리 방법의 모색을 위하여 -

조 경 구\*

1. 서론
2. 既刊 자료집을 통해 본 고문서 정리,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3. 고문서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기록학적 방법론의 적용
  - 1) 정리, 기술에 대한 기록학적 방법론
    - (1) 출처의 원칙
    - (2) 원질서의 원칙
    - (3) 계층적 관리
    - (4) 집합적 기술
  - 2) 고문서 자료에 대한 기록학적 방법론의 적용
    - (1) 출처, 원질서의 회복
    - (2) 계층적 관리 - 구조론적 정리
    - (3) 집합적 기술
  - 3) 기록학적 방법론 적용의 한계와 극복 방안
    - (1) 고문서의 특성에 따른 이론 적용의 문제점
    - (2) 기존 자료집의 활용을 위한 전산화
4. 결론

## 1. 서론

고문서는 글자의 의미만 놓고 본다면 “오래된 문서”라는 뜻이지만,

\* 서울대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석사

일반적으로 “甲이라는 주체와 乙이라는 대상 사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고받은 문서 중, 1910년 이전에 발행된 것”<sup>1)</sup>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고문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양상을 생생하게 드러내 줌으로써, 그 시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차자료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크고, 향촌사회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있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지방사 연구에 더없이 좋은 자료이다.

그러나 고문서가 갖는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본격적인 고문서학<sup>2)</sup>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문헌정보학이나 역사학적 관점에서 고문서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고문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 또는 외국의 이론을 간략히 소개하는 연구 등은 더러 있어 왔지만, 고문서학적인 관점에서 고문서의 양식이나 특징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거나, 혹은 기록학적인 입장에서 현재 전하는 고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정리, 기술, 보존

- 1) 고문서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논의는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은 정구복(정구복, 1992 「고문서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정신문화연구』 46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나 윤병태(윤병태 외, 1994 『한국고문서정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의 주장으로, 고문서를 “현대 이전의 1차 사료로서의 유일한 가치를 지닌 필사된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필사된 모든 기록”에 문집까지 포함시키고, 고문서의 종류에 詩文類를 설정하고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협의의 개념은 최승희(최승희, 1981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나 김동욱(김동욱, 1972 「이조 고문서의 분류에 대하여」, 『古文書集眞』, 연세대학교 출판부) 등의 입장이며, 여기에서는 고문서의 조건으로 “발급자, 수급자, 수수목적”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문서의 정의와 범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의 보다 진지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일단 협의의 개념을 수용하였다.
- 2) 고문서학은 “①고문서의 종류, ②고문서의 외형(재료, 형태, 封法, 문자, 서체와 墨色, 署押, 印章 등), ③고문서의 구성(내용, 서식, 작성의 수속과 방법) 등 고문서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여 체계화시키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최승희, 위의 책)

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퍼지 못했던 것이다.<sup>3)</sup> 게다가 각 기관에서 간행한 자료집<sup>4)</sup>의 체제도 통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 혹은 개인별로 고문서를 분산 수집 소장하고 있는 형편이라, 고문서 자료 전체에 대한 검색이나 총체적인 연구 등을 위한 효율적인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 고문서를 수집, 보존하는 데에만 힘쓸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현대 기록학 이론과 연계시켜 체계적으로 정리, 기술해주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고문서를 현대적 기록관리의 대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문서에 대한 기록학적 논의의 본격적인 출발은 대략 1997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에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국가기록연구재단’이 설립되며, “기록학”이 소개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고문서학회에서 발간하던 논문집 『고문서연구』도, 그 동안은 고문서의 내용을 위주로 한

- 
- 3) 고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역사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글은 수없이 많지만, 고문서 자체의 정리나 기술(記述), 검색 등 기록학적인 관점에서 고문서를 다룬 연구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고문서의 양식을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는 하혜정의 예가 있으며(하혜정, 2000 「古書 古文書 分類編目을 위한 套式 研究」, 『동양고전연구』14), “고문서학”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것으로는 김정하의 논문이 있다. (김정하, 2000 「역사기록물에 대한 고문서학-고서체학 연구 및 그 보존과 활용에 대한 기록관리연구」, 『고문서연구』 16.17집) 본 논문은 “고문서”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서구의 발전된 고문서학 이론을 활용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본 논문의 주제가 “고문서학”이 아니라, “고문서를 기록학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국내에서의 “고문서학”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
- 4) 대표적인 자료집으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간행하고 있는 『古文書』,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서 간행하고 있는 『古文書集成』 등이 있다. 목록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72년에 간행한 『고문서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3년에 간행한 『고문서목록』 등이 있다.

연구성과를 내다가, 1997년에 발간한 제 11집에서 “고문서 조사 정리의 방법과 과제”라는 주제의 특집을 내고, 본격적인 고문서 정리론을 다루었다.) 고문서학회는 또한 2001년에 개최한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도 고문서의 조사, 정리 문제를 다루었고<sup>6)</sup>, 2002년에는 ‘고문서 정리 표준화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산화를 전제로 한 고문서 정리와 기술의 표준화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앞의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각 기관이나 개인 소유의 현재 전하고 있는 고문서들을, 기록학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나의 일관된 기준에서 분류, 정리, 기술해서 검색과 활용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주는 데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지나치게 큰 과제가 될 것이기에, 이 글에서는 이미 간행된 자료집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문서 정리, 기술현황을 검토, 그 문제점을 찾아본 뒤, 기록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개선 방향 및 그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 5) 김현영, 「고문서 조사 정리에 있어서의 ‘현상기록’의 문제」; 안승준, 「최근의 고문서 조사 정리 현황과 분류방법의 문제」; 이해준, 「지방 고문서의 조사 수집과 과제」 등이 모두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이다. 물론 고문서 분류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이전에 김동욱(김동욱, 1967 「고문서의 양식적 연구 서설」), 최승희(최승희, 1981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정근(김정근, 1986 「고문서의 K.D.C.에의 접근」), 윤병태 외(윤병태 외, 1994 『한국고문서정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고문서의 형식, 정리, 보존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언급하였다고 보아 이렇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 6) 한국고문서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요지에는 안승준, 「고문서 조사 수집 및 정리와 그 실재」; 전경목, 「박물관에서의 고문서 수집 전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 7) 공청회에서는 이남희, 「디지털 시대의 고문서 정리 표준화」; 남권희, 「기록물의 서지기술 동향」; 이해준, 「고문서의 분류체계」; 정진영, 「고문서 정리 카드와 기술규칙」 등이 발표되었다.

## 2. 既刊 자료집을 통해 본 고문서 정리,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 1) 규장각 간행 자료집 『古文書』의 체제와 문제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는 소장 고문서를 분류, 정리, 탈초하고 이것을 활자화해서, 고문서 자료집 『古文書』를 간행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 모두 23권이 간행되어 있다. 국왕이 발급한 國王文書와, 왕실에서 발급한 王室文書, 관청에서 발급한 官府文書, 개인이 발급한 私人文書 등으로 분류하여 수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발급자 중심의 분류<sup>8)</sup>로 큰 틀을 잡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유형별로 하위 분류해서 각 유형에 해당하는 고문서들을 수록하고 있다.<sup>9)</sup> 그러나, 이 자료집을 그대로

---

8) 최승희는 1986년 간행된 고문서자료집 첫 권의 맨 앞에 쓴 간략한 해제에서, 앞으로 간행될 자료집을 國王, 王室, 官府, 私人, 結社, 奉神佛, 外交 文書 등으로 분류,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고문서연구』의 개정증보판(최승희, 1999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에서는 국내문서를 國王, 王室, 官府, 私人, 寺社, 書院(鄕校), 道觀, 奉神佛 文書 등으로 약간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체계이건 대부분 발급자에 따라 분류한 것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 중 奉神佛 文書는 ‘사람이 神, 佛에게 올리는 문서’라는 의미로 명명한 것이므로, 수급자 중심, 혹은 기능 중심의 분류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분류와 체계가 다소 맞지 않는다.

9) 국왕문서는 玉冊文, 五功臣會盟錄, 敎書, 批答, 綸音, 封書, 諭書, 受敎, 有旨, 傳旨, 敎旨 敎牒, 差帖, 祿牌, 恩賜狀, 致祭文, 諫文으로, 왕실문서는 箋文, 令書, 令旨, 徽旨, 曉諭, 手本, 啓目, 圖署牌旨, 祭文으로 각각 하위분류를 해서 1권에 수록해 놓았다. 관부문서는 箋文, 賀文, 上疏草, 笏子, 啓本, 啓目, 草記, 啓文, 狀啓, 書啓, 證號望單子, 望單子, 褒貶單子, 進上單子, 軹受單子, 達文, 關, 牒呈, 上疏, 書目, 解由, 差帖, 勿禁帖, 改名帖, 納粟帖許給帖, 馬帖, 甘結, 傳令, 訓令, 差使帖, 證號署經, 望單子, 祿標, 路文, 草料, 尺文, 文狀, 文狀書目, 告目, 稟告, 防偽私通, 行下, 古風, 立案, 招辭, 立旨, 題音, 傳准, 贈給, 照訖, 直赴帖, 帖文, 告示, 準戶口, 戶口單子, 戶籍表, 朝報, 節目, 事目, 完文으로 하위분류를 해서 제 2권부터 제 15권까지 수록해 놓았다. 16권 이하의 자료집에

활용하기에는 편집 상 다소 문제가 있다.

우선 자료집의 목차에서는 제목을 기록하는 방식이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 제목의 형태가 a. 수취자 - 연도/ b. 발급자 - 연도/ c. 발급자, 수취자 - 연도/ d. 발급자, (내용), 수취자 - 연도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료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목차를 보고 자료를 찾는다고 볼 때, 목차에 기재한 제목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많은 혼란과 불편을 줄 것이다. 또한 고문서의 수록 순서도 문서의 종류에 따라, a. 발급일자 순/ b. 지역별 가나다순 - 발급일자순/ c. 관청별 - 발급일자순/ d. 성씨별 가나다순 - 발급일자순 등이 뒤섞여 있다. 고문서마다의 특성에 맞는 배열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지만, 일정한 배열 기준이 없어 자료집 이용에 혼란을 준다. 그리고 수록 순서가 전체적으로 통일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서 유형별로 수록 순서의 기준을 다르게 해서<sup>10)</sup> 검색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규장각 간행 자료집 체제의 문제점은 곧 규장각 고문서 정리 방식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도 고문서의 제목이나 유형별 정리의 체계가

---

는 사인문서 중에서도 所志類만 수록되어 있는데 所志, 單子, 原情, 上書, 議送, 等狀, 訴狀, 白活, 山圖 등의 모든 유형을 所志類라는 큰 제목 하에 합친 뒤, 내용별로 山訟, 奴婢, 土地, 旌閭, 贈職, 書院, 鄉校, 族譜, 田稅, 身役, 戶役 등으로 재분류해서 수록하고 있다.

- 10) 편집 원칙에 대해서 양진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료집의 편집 순서는 고문서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였는데, 물론 이것은 고문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문서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적용 방식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문서의 특성만 알고 있다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목차만 보더라도 문서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양진석, 「규장각 소장 고문서 자료의 현황과 활용」, 규장각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2, 131~132쪽) 그러나 가급적이면 일관된 원칙에 따라 편집하면서도 활용에 편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잡하지 않은 우리나라 고문서 연구의 현실과 문제점이 자료집 체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각 고문서의 내용에 대한 기술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다.

## 2) 장서각 및 기타 기관 간행 자료집의 체계와 문제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장서각에서는 60여 권의 고문서 자료집 『古文書集成』을 간행하였다. 그런데 그 편집 체계는 집안이나 서원, 향교 별로 묶은 자료집과 고문서 종류별로 묶은 자료집 등이 혼재되어<sup>11)</sup> 있어서, 동일 기관에서 간행한 자료집이면서도 그 체계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류별로 묶은 장서각 소장 고문서 자료집은, 자료집 앞부분에 고문서의 분류와 내용에 대한 일반적 해설이 수록되어 있고<sup>12)</sup>, 목차에 들어가서는 단지 고문서의 종류별 명칭만 제

11) 장서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자료를 간행한 『古文書集成』 10권~15권에는 고문서를 유형별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편집 체계가 통일되지 않은 이유는 자료의 정리, 분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간행한 데서 온 결과로 보인다.

12) 이 경우의 고문서 분류는 최승희의 분류틀과 다소 다르다. 윤병태, 박옥화, 장순범 등 자체 연구팀이 『한국고문서정리법』에서 개발한 체계에서는 고문서의 대분류 항목을 1.敎令類, 2.疏.筭.啓.狀類, 3.牒.關.通報類, 4.證憑類, 5.明文, 文記類, 6.書簡.通告類, 7.置簿.記錄類, 8.詩文類, 9.外交文書類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경우 1.교령류는 국왕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린 문서, 2.소.차.계.장류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린 문서, 3.첩.관.통보류는 관부와 관부 사이에서 주고 받은 문서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1,2,3은 우선 발급자 중심의 분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4.증빙류는 문서의 기능을 기초로 한 명칭이고, 6.서간이나 8.시문은 문서의 유형을 중심으로 한 명칭이기 때문에 분류의 체계성이 문제가 된다. 또한 “4.증빙류”라는 명칭은, 사실상 ‘모든 고문서의 기능이 증빙’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고, “5.명문 문기류”에서의 ‘명문’은 ‘내용을 밝히는 글’ 정도로 번역되는, 문서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문서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고문서 분류 문제는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통일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시할 뿐, 각각의 고문서별 제목을 제시해 주지 않아,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집 전체를 뒤져보아야 하는 난점이 있다.

집안별로 묶은 자료집의 경우에는 앞부분에 집안에 대한 해설이나 수록된 고문서 자료에 대한 해제작업이 간략하게나마 이루어져 있어서 활용도를 다소 높여주고 있으나, 그것도 집안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해제 작업의 정도가 다르게 되어 있다. 결국 『古文書集成』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제 작업이나 정리작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거나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규장각 간행 자료집과 마찬가지로 고문서별 기술이 거의 되어있지 않아 자료 활용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고문서목록』<sup>13)</sup>은 1권에 書簡 11,374점을 등록번호순으로 수록하고 있고, 2권에서는 나머지 문서를 국왕문서/ 관부문서/ 사인문서/ 봉신불문서/ 잡서.기타 등으로 분류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영남대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소장 고서와 고문서 목록집인 『고서.고문서 목록』<sup>14)</sup>을 간행하였는데, 고문서의 경우는 윤병태의 분류 체제를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료집들의 체제가 모두 규장각 자료집이나 장서각 간행 자료집과 크게 다르지 않고, 각 고문서별 기술이 되어있지 않는 등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노명호<sup>15)</sup>는 정치 경제 사회적 성격이 유사한 문서들끼리 묶어 敎書. 功臣文書類/ 人事文書/ 財産關聯文書/ 戶口文書/ 官廳帳簿. 記事類/ 寺祠關聯官文書/ 外交文書/ 其他로 분류하고 있어 고문서 분류틀의 한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명호의 작업은 그 대상이 고려 이전의 자료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시키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13) 국사편찬위원회, 『고문서목록』, 1993.

14)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고문서 목록』, 2000.

15) 노명호 외,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3. 고문서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기록학적 방법론의 적용

#### 1) 정리, 기술에 대한 기록학적 방법론

기록학에서 정리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처리과정’이라고 정의되며,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공통된 성격과 공통된 파일 구조를 갖는, 같은 원천으로부터 나온 기록물들을 확인하거나 한데 모으고; 기록물끼리의 관련성, 기록물과 그 기록물 생산자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그리고 기술(記述)은 ‘기본적으로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록물과 그 생산자들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있는 정보를 모으는 것; 그 정보를 지적·행정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하는 것; 그리고 보존소의 내부, 외부에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sup>17)</sup> 간단히 말해서 정리는 “기록물을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면, 기술은 “그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18)</sup> 이제 정리와 기술에 대한 기록학에서의

---

16) F. Miller,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S.A.A, 1990. (조경구 역, 진리담구, 2002.). 6장. p89. 이하 이 글에서 소개되는 기록학의 개념이나 이론들은 대부분 이 책에 정리된 것을 인용한다. 왜냐하면 이 책은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SAA)에서 출판한 Fundamental Series의 하나로서, 서구에서 기록학이 학문적으로 본격화된 이후부터 가장 최근의 성과까지의 기록학 이론을 수용, 종합해서 만든 기본 이론서이자, 실무에서 적용 가능하게 만든 매뉴얼이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이론이 우리 고문서의 경우에도 그대로 다 들어맞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록학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에게 최소한 논의의 출발점은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17) Miller, 8장, p125

18) 본 논문은 “고문서의 정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리”하고 “기술”하는 것은 사실상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함께 다

몇 가지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을 삼고자 한다.

### (1) 출처의 원칙

출처의 원칙은 기록물들이 주제분류나 또는 다른 분류체계를 따르지 말고, 그 생산자나 원천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출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 정보, 즉 기록물을 생산하도록 이끈 조직의 상황과 활동의 과정을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평가된다. 이 출처의 원칙은, 현대 기록학에서는 이미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문서 중에서 교서, 교지, 봉서, 유지 등 관직 임명과 관련된 고문서의 생산자는 임명된 신하가 아니라 그를 관직에 임명한 국왕<sup>19)</sup>이다. 그러나 고문서를 생산자인 왕을 중심으로 정리할 경우 우리는 어느 왕이 발급한 수십 수백 장의 관직 임명장 더미 속에 묻힌 채, 낱장의 고문서가 가지고 있는 사료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이다.<sup>20)</sup> 왕이 내린 교지는,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매우 가치있는 문서로서, 집안에 소장되어 대대로 전해지면서 그 사람의 '상황과 활동의 과정을 가장 잘 보존'해 줄 것이다. 따라서 고문서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유기

---

루고자 한다.

19) 교지, 교서, 유지 등은 국왕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도승지 등이 작성하여 왕의 재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도승지 등이 작성한다고 해도 그것은 왕의 의도를 대신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서의 생산자는 국왕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20) 이것이 바로, 고문서를 유형별로 묶어서 정리하는 현 방법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물론 현재의 종류별 정리 방법도 관련 고문서 전체를 이용한 포괄적 연구에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역으로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처럼, 인물이나 집안별로 고문서 자료를 묶었을 경우, 종류별로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등 자료집을 이용하는 데 오히려 새로운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자료 이용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 자료의 전산화와 다양한 목록집 간행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적인 질서와 의미가 더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문서의 출처를 그 개인이나 집안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sup>21)</sup>

## (2) 원질서의 원칙

“기록물은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활동 과정에서 부여받은 순서와 지시대로 보존되어야 한다.”<sup>22)</sup>고 하는 것이 원질서의 원칙이다. 원질서는 일반적으로 출처에 따라 조직된 기록물이 수행했던, 그 시스템 내에서의 기능을 나타낸다. 한 기관 기록물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 기관의 조직적인 구조를 반영하고, 그 기록물이 본래 종사했던 행정적 목적을 드러내 주기 때문에, 기록물로부터 올바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기록물이 원래의 질서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이론을 주장하는 근거이다.<sup>23)</sup>

---

21) 출처와 관련해서는 김현영의 다음과 같은 지적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신문화연구원의 『古文書集成』과 같이 가문별, 단체 조직 기관별로 정리하여 간행하는 것이 사료의 조사 정리 간행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여진다. 규장각의 『古文書』는 다수의 문서들을 소장한 곳에서 그것을 간행해 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이 자료들은 이미 생산처를 잃어버린 것들이어서 연구자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김현영, 1997 「고문서 조사 정리에 있어서의 ‘현상기록’의 문제」, 『고문서연구』 11집, 16-17쪽) 또한 본 논문이 자료집 체제에만 문제를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 고문서 전체를 파악하는 포괄적인 틀을 생각해 보려는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고문서를 인물별, 집안별로 묶어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정리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는 또한 고문서 자료의 특성이 정부 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아카이브즈(Archives)라기보다는, 개인의 수집품인 컬렉션(Collection)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22) Ernst Posner, “Some Aspects of Archival Development Since the French Revolution”, *A Modern Archives Reader*, 미국립기록관리청, 1940, Miller 3장에서 재인용.

23) 물론 이러한 주장은, 원질서가 그 기록물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Schellenberg는 원질서가 “유기적인 활동”을 반영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반영하는 다른 질서로 대체될 수 있다, 즉 보다 유기적인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원질서가 재구성될 수도 있다고 주

고문서를 주제별, 종류별이 아닌 집안별, 개인별로 묶어서 정리하고 나면, 좀더 세부적인 정리로 들어갈 때 자연 원질서의 문제가 따르게 된다. 고문서들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찾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집안이나 개인별 고문서를 종류별로 재분류한 뒤, 같은 종류의 고문서들끼리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거나, 전체 고문서를 시간 순으로 배열해서, 서로 연관을 갖는 것들을 찾아내는 등의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의 시간적 순서는 고문서의 생산 순서 이면서, 동시에 고문서가 기능을 발휘한 순서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찾아내 바로잡아주는 것이 원질서 회복의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 (3) 계층적 관리

“계층적 관리”는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의 원칙을 이행하는 과정에

---

장하였다.(T. R. Schellenberg, *The Management of Archives*, 1965, p100.) Schellenberg의 이 주장은 낱장으로 수집 정리된 규장각 소장 고문서를 정리할 때 특히 유용한 이론적 뒷받침이 될 것이다.

- 24) 이상적인 경우라면, “원질서의 원칙”에 대한 논의에는 단순한 고문서의 발급 순서, 문서가 효력을 발휘한 순서 뿐만 아니라, 그 고문서가 “소장자에게 입수된 순서, 원래 소장되고 있던 원질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이미 낱장으로 분리되어 수집 정리된 규장각 소장 고문서에 대해서 이러한 작업을 시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낱장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고문서들에 대해서, 이미 파괴되어 버린 원질서를 회복시켜 유기적인 관계를 되찾아 준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적인 관계를 되찾아 줄 수 있는, 비교적 객관적이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도 손쉬운 방법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자료를 다 시간 순으로 배열한다고 해서 원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원질서의 회복”이라는 용어가 타당한가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는다. 왜냐하면 이미 원질서가 흩어진 채 낱장으로 수집된 고문서들의 원질서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정”해 보는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 나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와 “원질서”의 두 원칙은 기록물을 위계적인 구조에 따라 기술 또는 보존할 것을 지시해 왔고, 그 원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층적 관리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계층적 관리의 핵심은 기록물을 가장 크고 가장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작고 가장 구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즉, 기록물군-하위군-시리즈-폴더(파일)-아이템(문서)의 연속체를 따라서 점차적으로 기록물을 정리해서 묶어주고 각 계층별로 기술을 해 주는 것이다.

고문서를 계층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한 집안 혹은 개인의 문서”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 다시 고문서를 기능별로 묶어, 인사관계, 재산관계 등의 하위 개념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하위 개념 안에서 문서 유형 등 또다른 하위 단계로 나눈 뒤, 마지막으로 각각의 낱장 고문서를 다루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계층적 관리는 고문서를 출처에 따라 묶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문서 원래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된다.<sup>25)</sup>

#### (4) 집합적 기술

기록물을 분리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집합적인 전체로 기술하는 원칙 역시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의 원칙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집합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계층적 구조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총체적으로 기술해 준다’는 의미이다. 계층별로 정리한 기록물 집합체의 공통된 특성들을 집합적으로 기술해 주면, 기록물 자료를 통일적으로 개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또한 기록물 각각에 대

---

25) 이 이론은 기관 소장 기록물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관하는 데 응용할 수도 있다. 즉 규장각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서, 고문서, 책판, 회화자료 등 전체 자료를 개관해서 자료별 군을 설정하고, 그 중 하나인 고문서군을 집안이나 개인으로 묶어주고(기록물 군), 개인별 고문서군을 다시 기능별, 종류별로 분류해서 묶어 주는 등의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서 그 특성을 또다시 기술해 주는 불필요한 작업을 없애준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실용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고문서를 계층적 구조 개념에 따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기록물군(집안) - 하위군(개인) - 하위하위군(문서군) - 시리즈(문서 종류 : 인사관계, 재산관계 등) - 아이템(각각의 문서) 순으로 내려가도록 정리할 수 있다. 기록물군(집안)에 대한 기술에서는 집안의 계보나 위상, 성격, 집안 기록물 전체의 개관 등을 기술해 주고, 하위군(개인)에 대한 기술에서는 그 개인의 일생과 하위군 내에 포함되는 고문서의 개요를 기술해 주며, 하위하위군(문서군)에 대한 기술에서는 거기에 속한 문서들의 범위, 윤곽 등을 대략적으로 기술해 주고, 시리즈(문서 종류)에 대한 기술은 그 시리즈 안에 들어 있는 고문서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해 주는 것이 집합적 기술의 개념이 될 것이다.<sup>26)</sup>

## 2) 고문서 자료에 대한 기록학적 방법론의 적용 - 鄭晚錫 관련 고문서를 중심으로

이제 위에서 언급한 기록학적 이론들을 실제 고문서 자료집에 들어 있는 자료에 적용시켜 보면서, 그 장점이나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보기

---

26)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이론과 관련하여 일본의 안도 마사히토(安藤正人)는 그의 저서 『記録史料學と現代』에서, 기록사료 덩어리 전체를 하나의 체계적인 구조를 갖는 실체로 받아들이자는 “기록사료군의 구조적 인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기록사료군이 본래 내포하고 있는 체계적 유기적 질서구조를 검출, 보존, 복원하자고 하는 “구조적, 기능적 정리론”을 펴면서 그 구체적인 원리로 다른 곳의 자료와 혼합되지 않고 생산기관별로 자료를 다뤄야 한다는 출소원칙(=출처의 원칙)과, 기록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정리, 배열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질서 존중원칙(=원질서 존중원칙)을 강조하는 그의 주장은 서구의 기록학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안도의 방법론은 우리의 고문서 자료를 정리, 기술하는 데 이론적으로도 좋은 참고가 된다고 하겠다. (安藤正人, 『記録史料學と現代』, 吉川弘文館, 1998, p 27.)

로 한다. 대상 자료는 조선 후기의 문신 鄭晩錫(1758 - 1834)과 관련된 고문서<sup>27)</sup>이다. 2002년 현재까지 나온 자료집 『古文書』에 수록된 鄭晩錫 관련 고문서는 모두 34점이다. 자료집 제1권에는 국왕문서인 敎書(3), 封書(1), 有旨(3)<sup>28)</sup>, 교첩(1), 敎旨(18)<sup>29)</sup>, 祿牌(3) 등 모두 29점이 여

27) 鄭晩錫은 조선 정조, 순조 년간에 활동한 문신이다. 정만석과 관련된 고문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古文書』에 수록된 자료들 중에서 정만석 관련 고문서가 비교적 종류도 다양하고, 수량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 고문서 자료를 정리 기술하는 방법론을 찾아보려는 본 논문의 취지에 잘 맞을 것이라는 편의적 이유에서이다. 다른 자료를 가지고 논의해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

28) 『古文書』 제1권 有旨 중에는 平安道觀察使鄭開圻이라는 제목만 있어서, 이것이 정만석 관련 문서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서가 셋 나온다. 하나는 嘉慶 19년(순조14년, 1814) 7월 27일자 문서로, “평안도 관찰사가 올린 사직 상소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유지, 두 번째는 다음해(1815) 4월 18일자 문서로, 역시 “사직 상소를 불허한다”는 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해(1815) 5월 7일자 문서로, 이번에는 “사직 상소를 허락한다”는 유지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순조 12년 1월 16일에 정만석을 평안도관찰사로 임명한다는 기록이 나오고, 순조 15년 5월 23일에는 한성부판윤으로 임명한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정만석이 순조 15년 5월 평안도 관찰사를 사직하고 바로 한성부판윤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세 편의 有旨도 정만석 관련 고문서로 보아야 한다.

29) 『古文書』 제1권 有旨 중에는 平安道觀察使鄭開圻이라는 제목만 있어서, 이것이 정만석 관련 문서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서가 셋 나온다. 하나는 嘉慶 19년(순조14년, 1814) 7월 27일자 문서로, “평안도 관찰사가 올린 사직 상소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유지, 두 번째는 다음해(1815) 4월 18일자 문서로, 역시 “사직 상소를 불허한다”는 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해(1815) 5월 7일자 문서로, 이번에는 “사직 상소를 허락한다”는 유지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순조 12년 1월 16일에 정만석을 평안도관찰사로 임명한다는 기록이 나오고, 순조 15년 5월 23일에는 한성부판윤으로 임명한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정만석이 순조 15년 5월 평안도 관찰사를 사직하고 바로 한성부판윤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세 편의 有旨도 정만석 관련 고문서로 보아야 한다.<sup>29))</sup>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 임명장이고, 교지는 4품 이상의 관원에 대한 임명장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기능을 갖는 문서로 취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앞

기 저기 분산 수록되어 있고, 또 관부문서인 準戶口 5점은 아예 권을 달리하여 자료집 10권에 수록되어 있다.

(1) 출처, 원질서의 회복

위의 자료집처럼 고문서들을 이렇게 종류별, 유형별로 정리해 놓을 경우, 한 개인의 문서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연도 순도 뒤섞여 있기 때문에, 자료집 이용 연구자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 자료를 누락시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유형별 수록보다는 인물별(출처별) 수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의 원칙에 따라 자료집에 수록된 고문서 중 정만석 관련 고문서를 일단 한 곳에 모아 놓고,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도표1> 참조)

<도표 1> 자료집 순서대로 정리한 고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만석 역임 관직 정보

<국왕문서(제 1권)>

교서

- 1807(순조 7) 嘉善大夫 公忠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公州牧使
- 1809(순조 9) 嘉善大夫 慶尙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大邱都護府使
- 1819(순조19) 正憲大夫 行廣州府留守 兼南漢守禦使

봉서

- 1798(정조22) 慶尙道暗行御史 迎日縣監

유지

- 1814(순조14) 平安道觀察使
- 1815(순조15) 平安道觀察使
- 1815(순조15) 平安道觀察使

교첩

으로 “교지” 내에 “교첩”을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1766(영조42) 將仕郎

교지

- 1806(순조 6) 嘉善大夫 行東萊都護府使
- 1809(순조 9) 嘉善大夫 慶尙道觀察使 兼巡察使 大邱都護府使
- 1809(순조 9) 兼慶尙道兵馬水軍節度使
- 1820(순조20) 正憲大夫 兵曹判書
- 1821(순조21) 正憲大夫 行龍驤衛大護軍
- 1821(순조21) 正憲大夫 知中樞府事
- 1821(순조21) 正憲大夫 漢城府判尹兼知經筵事
- 1821(순조21) 崇政大夫 行漢城府判尹
- 1821(순조21) 崇政大夫 行龍驤衛上護軍
- 1821(순조21) 崇政大夫 行知敦寧府事
- 1823(순조23) 崇祿大夫 行兵曹判書
- 1823(순조23) 崇祿大夫 行漢城府判尹 兼判義禁府事
- 1824(순조24) 崇祿大夫 行知中樞府事
- 1826(순조26) 崇祿大夫 行戶曹判書 兼判義禁府事 知經筵事
- 1827(순조27) 崇祿大夫 行工曹判書 兼判義禁府事
- 1828(순조28) 輔國崇祿大夫 兼吏曹判書
- 1829(순조29)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 兼領經筵事 監春秋館事
- 1831(순조31) 大匡輔國崇祿大夫 行判中樞府事

녹패

- 1815(순조15) 資憲大夫戶曹判書
- 1816(순조16) 資憲大夫戶曹判書
- 1821(순조21) 正憲大夫兵曹判書

<관부문서(제 10권)>

준호구

- 1795(정조19) 吏曹佐郎
- 1795(정조19) 吏曹佐郎
- 1798(정조22) 朝奉大夫兵曹正郎
- 1804(순조 4) 通政大夫東萊府使
- 1816(순조16) 正憲大夫戶曹判書

위의 도표에서 보듯, 출처의 원칙에 따라 정만석에 관련된 고문서를 한 곳에 모은다 해도, 시간적으로 순서가 뒤바뀐 채 모으게 되면 아직도 완전한 정보<sup>30)</sup>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정만석의 삶을 순서대

로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순서를 따른 자료의 유기적인 재배열이 불가피하며, 이것이 원질서 회복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만석과 관련된 위의 고문서들을 한데 모아, 연대순으로 재배열한 결과 얻어질 수 있는 정만석 역임 관직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도표2>참조)

<도표2> 연대순으로 재배열한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만석 역임 관직 정보

(괄호 안은 고문서 자료)

1766(영조42)년	將仕郎에 임명됨	(敎牒)
1795(정조19)년	吏曹佐郎이 됨	(準戶口)
1798(정조22)년	慶尙道 暗行御史로 나가면서 迎日縣監을 겸함	(封書)
1798(정조22)년	朝奉大夫로 兵曹正郎이 됨	(準戶口)
1804(순조 4)년	通政大夫로 품계가 오르면서 東萊府使를 맡음	(準戶口)
1806(순조 6)년	嘉善大夫가 되면서 行東萊都護府使직을 수행함	(敎旨)
1807(순조 7)년	公忠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로 公州牧使 직을 수행함	(敎書)
1809(순조 9)년	慶尙道觀察使 兼巡察使 大邱都護府使로 임명됨	(敎旨)
1809(순조 9)년	兼慶尙道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됨	(敎旨, 敎書)
1814(순조14)년	平安道觀察使 재직	(有旨)
1815(순조15)년	平安道觀察使 사임	(有旨)
1815(순조15)년	資憲大夫로 승격되면서 戶曹判書를 맡음	(祿牌)
1816(순조16)년	正憲大夫로 戶曹判書 직을 수행함	(準戶口)
1819(순조19)년	行廣州府留守 兼南漢守禦使 직책을 맡음	(敎書)
1820(순조20)년	兵曹判書가 됨	(敎旨)
1821(순조21)년	行龍驤衛大護軍이 됨. 같은 해에 知中樞府事를 맡아봄 漢城府判尹兼知經筵事 직을 수행하며 崇政大夫로 품계가 오른 뒤 行漢城府判尹과 行龍驤衛上護軍	(敎旨) (敎旨)
	行知敦寧府事 등을 맡음	(敎旨)
1823(순조23)년	崇祿大夫가 되면서 行兵曹判書 직을 수행하고 이어서 行漢城府判尹 兼判義禁府事 직을 맡음	(敎旨) (敎旨)
1824(순조24)년	行知中樞府事를 맡아봄	(敎旨)

30) 고문서 자료만 가지고도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고문서 자료가 “완전한” 정보를 얻기 위한 1차적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1826(순조26)년 行戶曹判書 兼判義禁府事 知經筵事를 맡아봄	(教旨)
1827(순조27)년 行工曹判書 兼判義禁府事를 맡음	(教旨)
1828(순조28)년 輔國崇祿大夫로 품계가 올라가면서, 兼吏曹判書를 맡아봄	(教旨)
1829(순조29)년 大匡輔國崇祿大夫로 품계가 오름, 議政府右議政 兼領經筵事 監春秋館事를 맡아봄	(教旨)
1831(순조31)년 行判中樞府事를 맡아봄	(教旨)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문서를 종류별로 정리하지 않고 인물별, 출처별로 모아서, 시간 순으로 재정리해 원질서를 되찾아줄 경우, 鄭晚錫이 역임한 관직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때로는 교서나 교지만이 아니라, 다른 고문서(여기서는 녹패나 준호구)에서도 그가 역임했던 관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모든 고문서 자료가 이렇게 인물별로 완전히 정리된다면, 한 인물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통해, 동일 자료에 같이 등장하는 동시대인들과의 관련성을 찾아 횡적으로 연구를 해볼 수도 있고, 호구 등의 자료에 나타나는 직계 가족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문별 문서를 연관시켜 종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 (2) 계층적 관리 - 구조론적 정리

정만석 관련 고문서들을 한데 모으고,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고 해도, 자료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 전체를 계층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록물을 위계적인 구조에 따라 정리해 주어야 한다. 기록물군-하위군-시리즈-폴더(파일)-아이템(문서)의 개념을 적용시켜서 고문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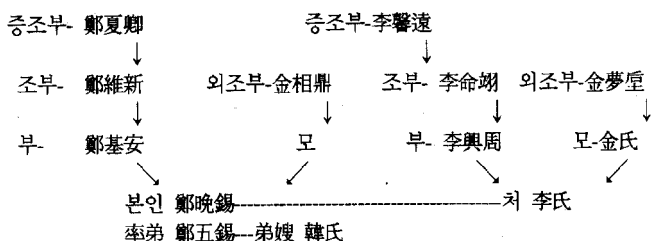
### ① 기록물군

고문서 자료 전체 중에서는, “한 집안 혹은 개인의 문서”가 기록물군의 1차적 단위가 될 것이다.<sup>31)</sup> 더 세분해야 할 경우, “집안”은 “개

31) 엄밀히 말하면 이 경우에 알맞은 명칭은 “기록물군”이 아니라 “고문서군”이

인”의 상위 개념으로 설정해 주면 된다. 자료가 충분하다면 모든 “개인”별 기록물군을 설정해 주고, 가족들의 기록물군은 상위 단계에서 서로 연계 [link]시켜 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대표적인 한 사람의 기록물군과 관련시켜 별도의 하위군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물군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정만석의 준호구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家系圖를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도표 3> 참조)

<도표 3> 이조좌랑 정만석 준호구(정조 19년; 1795)<sup>32)</sup>를 통해 본 가계도



정만석을 중심으로 직계 가족은 증조부 鄭夏卿, 조부 鄭維新, 부 鄭基安, 외조부 金相鼎, 처가 쪽으로는 처의 증조부인 李馨遠, 조부 李命翊, 부 李興周, 외조부 金夢堯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아버지 정기안과 관련된 문서만 영조 20년(1744)의 教旨, 영조 25년(1749)의 教旨 이렇게 두 편<sup>33)</sup>이 있을 뿐이고, 그 외의 나머지 사람들과 관련된 고문서 자료

되어야 할 것이다. 논의 대상이 순수한 고문서만으로 이루어진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록학적인 단위로 이미 “기록물군”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었고, 추후에 고문서 자료가 아닌 다른 기록물을 포함시킬 때 좀더 일반적인 논의를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군”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아 이 용어를 채택한다.

32) 이 준호구가 발급된 때부터 20여 년이 지난 순조 16년(1816)에 발급한 “통정대부 동래부사 정만석 준호구”를 보면, 조상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변화가 없으며, 다만 率弟 정오석이 率子 鄭澤度로 바뀌어 있을 뿐이다.

는 한 점도 없다.<sup>34)</sup> 이 경우처럼 정만석과 관련된 문서는 34점이고, 그 아버지와 관련된 고문서가 2점일 때, 아버지의 기록물군을 따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정만석 기록물군”에 포함시키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물론 정기안 관련 고문서가 더 발견되면, 그때는 정기안을 독립된 기록물군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 ② 하위군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물군을 설정한 다음에는, 다시 그것을 하위군으로 분류해 주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일단 기능이나 활동별로 하위군 개념을 설정하고자 한다.<sup>35)</sup> 정만석 관련 고문서에는 우선 정만석을 1) 公忠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公州牧使, 2) 慶尙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大邱都護府使, 3) 行廣州府留守 兼南漢守禦使로 임명하여 보내면서, 각 지역의 사정을 설명하고, 가서 해야 할 임무 등을 밝혀주는 敎書가 세 편 있다. 이 교서는 일단 ‘人事關聯文書’<sup>36)</sup>

33) 정기안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영조 12년부터 순조 34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58건이 나오지만, 자료집에 수록된 고문서 자료는 현재까지 단 두 점밖에 없다.

34) 물론 이것은 규장각 간행 자료집 『古文書』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자료집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또한 자료집 목차 중에는 인명으로 검색하기에 분명치 않은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私人文書 中所志類에는 많은 경우 주인의 대리인으로서 노비의 이름이 나오는데, 정생원 때 奴 ○○, 정창판때 奴 ○○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이 鄭氏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자료로서 활용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고문서를 수집할 때 원질서의 원칙을 지켰거나, 최소한 출처를 밝혀놓았다면, 자료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35) 기록물군과 하위군, 시리즈에 대한 본 논문에서의 분류들은 Miller의 이론을 많은 부분 수용하였다. Miller는 “베일리 서류”라고 하는 가상의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기록물군으로 상정하고, 그 하위군으로서 활동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I. 기업활동, II. 시민활동, III. 정치활동, IV. 개인 파일, V. 메리해치 베일리(그의 아내) 서류, VI. 자필 컬렉션 등을 설정해 놓고 있다. (Miller, 9장 p154 도표 9-8)

36) 노명호는 문서들을 1)敎書.功臣文書類, 2)人事文書, 3)財産關聯文書, 4)戶口文

로 분류하기로 한다. 평안도관찰사 사직 상소에 대한 회답인 有旨 세 편도 역시 ‘人事關聯文書’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경상도 암행어사로 파견되면서 받은 封書, 관직 임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19 편의 教牒, 教旨 등도 모두 ‘人事關聯文書’로 분류할 수 있다. 녹봉을 받아갈 수 있는 증표인 祿牌에는 관직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문서의 실질적인 기능은 녹봉의 지급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것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문서라고 보아서 일단 ‘財産關聯文書’로 분류할 수 있다. 관부문서에 분류되어 있는 準戶口는 정만석의 가족 상황을 알려주는 문서라는 의미에서 ‘家族關聯文書’로 분류할 수 있다.

아직까지 간행되지 않은 자료 중에서도 정만석 관련 자료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sup>37)</sup> 그러므로 가상의 자료를 몇 가지 더 설정해서 논의의 폭을 넓히고 일반화의 가능성까지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 예시된 것들은 가상의 고문서 자료들이다.

정만석은 관찰사로 나가서 지방관리의 부정을 발견하고 조치한 후 이를 보고 하는 장계를 올렸다.(狀啓)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집안 동생의 아들을 데려와 양자로 삼고, 이를 문서로 남겼다.(立後成文)<sup>38)</sup> 생전에 재산을 아들, 딸

書, 5)官廳帳簿, 記事類, 6)寺祠關聯官文書, 7)外交文書, 8)其他로 나누고 있다. 이 분류 체계도 기능별 혹은 출처별 기준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참고할 만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노명호 외, 『한국고대중세 고문서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37) 현재로서는 간행된 자료집 외에 다른 자료를 열람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이 소장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규장각 소장 고문서 전체에 대한 목록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38) 1795, 1798, 1804년의 준호구를 살펴보면 말미에 率弟, 즉 데리고 있는 아우로 鄭五錫과 그의 처(弟嫂) 한씨만 등장하는데, 12년 후인 1816년의 준호구에는 率子, 즉 데리고 있는 아들 鄭澤度와 그의 처(子婦) 한씨가 나온다. 그런데 아들의 나이는 32세로 되어 있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들이 이미 32세가 되어 새로이 등장하고 있으니 이는 후사가 없어 아들을 입양해 온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직 간행되지 않은 자료 중에 立後成

에게 나누어주면서 이를 문서로 남겼다.(分給文記) 재산이 늘자 그 돈으로 토지를 사들였다.(土地文記) 노비를 나누어주기도 하고, 나라에서 받기도 하고, 남에게 팔기도 하였다(奴婢文記)<sup>39)</sup> 화재가 났을 때 한 노비가 죽음을 무릅쓰고 정만석을 구해 주었기에 그를 속량시키고 이것을 문서로 남겼다.(贖良文記) 인근 고을의 선비들과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詩會를 열기도 했는데 그 모임 날짜와 장소를 통보하는 문서를 만들어 들렸다.(通文) 죽은 친구의 빈소에 찾아가 제문을 지어 올렸다.(祭文) 은퇴 후 나라의 정책에 관해 상소를 올리면서 그 초고를 보관하였다.(上疏)

앞의 자료집 소개 고문서 자료들에 대해서 ‘人事關聯文書’, ‘財産關聯文書’, ‘家族關聯文書’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처럼, 가상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역시 기능별 명칭을 붙여볼 수 있을 것이다. 立後成文은 일단 ‘家族關聯文書’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分給文記와 土地文記, 奴婢文記, 贖良文記 등은 ‘財産關聯文書’에 포함시킬 수 있다. 通文과 祭文은 교우관계나 사회적 활동을 나타내주므로 ‘社會活動文書’로, 狀啓와 上疏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政治活動文書’로 분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인물 중심의 기록물군 개념은 ‘人事關聯文書’, ‘財産關聯文書’, ‘家族關聯文書’, ‘社會活動文書’, ‘政治活動文書’ 등의 하위군으로 분류해 줄 수 있는 것이다.<sup>40)</sup>

문이 존재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 39) 다섯 점의 준호군 자료에 수록된 노비 명단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이는 노비를 매매, 혹은 양도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매매나 양도에 관련된 문서가 자료집으로 간행되어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40) 물론 하위군을 반드시 이렇게 설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위군 개념을 생략하고 이것을 바로 시리즈로 설정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본다. 그렇게 할 경우 유지, 교서, 봉서 등은 폴더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 하위 시리즈로 묶을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가 남는다. 시리즈 내에 하위 시리즈를 또 다시 설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서는 일단 베일리의 경우에 준하여 하위군을 설정해 보았다. 이에 대해서

### ③ 시리즈

하위군 내에는 다시 시리즈를 설정할 수 있다. 시리즈는 “그것의 생산, 기능, 접수, 물리적 형태 또는 활용 등에서 생겨난 어떤 별도의 관련성 때문에, 그것을 생산해낸 조직이나 개인이 통일된 파일링 시스템에 따라 정리하거나, 하나의 단일체로 유지하는, 파일 단위나 문서들의 덩어리”<sup>41)</sup>로 정의된다. 정만석의 고문서에 이 개념을 적용시켜 본다면, ‘인사관련문서’라는 하위군 안에 교지나, 교서, 유지처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동일한 유형의 문서가 여럿 존재할 경우, 그것들 각각을 하나의 시리즈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다.<sup>42)</sup> ‘재산관련문서’ 속에 들어 있는 토지문기, 분급문기, 녹패; ‘가족관련문서’ 내의 준호구, 입후성문; ‘사회활동문서’ 내의 통문, 제문; ‘정치활동문서’ 내의 상소, 장계 등도 모두 그런 관점에서 시리즈로 묶을 수 있다.<sup>43)</sup> 이 시리즈는 다시 폴더(파일)-아이템(문서)으로 내려가면서 계층적 관리 개념을 완성시켜 된다.

### ④ 폴더(파일), 아이템(문서)

매매거래가 성사되면, 매수자는 매매문서에 덧붙여서, 그 매매 사실을 관청에서 확인해 달라는 청원서 [所志]를 제출하고, 관청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 입안발급 결정에 대한 처분 [題音]을 소지의 여백에

---

는 무엇보다도, 현존하는 고문서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41) Miller, 제 1장, p16

42) 베일리 컬렉션의 하위군도 시리즈로 나누어진다. 하위군 중 “I.기업활동”에는 1.Bedford Falls 저축과 대출, 2. 미들타운 제일 국가은행, 3. 은행가 원탁회의, 4. 은행 “독서 파일” 등의 시리즈가 들어 있다. 시리즈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으로서 상호 관련성이 높은 자료들을 묶어준 것임을 알 수 있다.(Miller, 9장 p154 도표 9-8)

43) 이렇게 보면, 시리즈는 고문서의 유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문서에서 시리즈는 “한 개인과 관련된 동일 유형의 고문서 집합”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다.

적어서 돌려준다. 그리고 관청에서는 매도인과 증인, 筆執에게 매매사항을 확인하는 진술서 [招辭]를 받은 뒤, 매도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立案]를 발급해 준다. 때로는 여기에 양반인 매도자가 노비 ○○에게 매매를 위임했다는 위임장 [牌旨]이 포함되기도 한다.<sup>44)</sup> 이렇게 해서 일련의 문서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하나의 거래가 실질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마무리되는 것이다. 고문서 중에는 이렇게 所志-題-音-招辭-立案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점련문서 세트들이 존재하거나, 과거로부터의 일련의 거래 과정이 누적되어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서로 묶여 있어야만 의미가 온전해지는 고문서 세트를 ‘폴더’<sup>45)</sup>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폴더’ 다음으로 계층적 구조의 마지막 단계인 ‘아이템’은 각각의 고문서 낱장을 가리킨다고 보편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살핀 정만석 관련 고문서는 다음의 도표와 같은 계층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도표 4〉 참조)<sup>46)</sup>

44) 물론 노비가 대리인이 아니라 매매의 주체일 경우도 있다. 노비가 매매의 대리인일 경우는 그 매매문서의 출처를 노비의 주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노비 자신이 매매의 주체일 경우는 그 노비를 출처로 설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45) 미국 아키비스트협회에서 발행한 Glossary에서는 폴더(Folder)를 “다량의 문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두꺼운 종이”로 풀이해 놓았지만, 이 글에서처럼 기록물 단위를 나타낼 경우에는 폴더 자체가 아니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함께 들어있는 문서들”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AA, 1992 *A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 Managers*)

46) 옥영정은 金務許典文記의 계통도를 살피면서, A.광산김씨 고문서 전체 안에서 - B.광산김씨 예안과 고문서를 하위 단계로 묶어주고, - 그것을 다시 C.敎令類, 疏劄啓狀類, 證憑類, 明文, 文記類 등으로 분류한 뒤, C.明文, 文記類 안에서 - D.分財記, 노비문기, 토지문기 등의 하위분류를 하고, D.분재기를 - E.和會文記, 분급문기, 별급문기, 허여문기 등으로 분류한 뒤, E.許典文記 안에 - F.김부허여문기를 위치시키고 있어서 나름대로의 계층구조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분류법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C나 D 단계에서의 분류기준이 체계적이지 않아 문제가 있다.(옥영정, 「古文書 分財記의 목록작성 방향설정 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20, 2000, 353쪽)

<도표 4> 정만석 관련 고문서의 계층구조



(3) 집합적 기술

기록물 계층의 각 단계에 대한 집합적 기술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기술 도구는 “인벤토리”<sup>48)</sup>라고 할 수 있다. 인벤토리에 나타날 정

47) 앞의 논의대로라면 하위군에 “정기안 문서”가 설정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정만석 고문서를 논하는 데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설정하지 않는다.

48) 인벤토리는 “단일 기관의 전체 기록물 또는 그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기록물군(群), 류(類), 계열(系列)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다양하게 기술하고 나열한 검색도구로서, 통상적으로 기록물 생산기관의 약사(略史)와 기능을 포함하되, 적절한 경우에는 색인도 기록하는 기술 도구.”로 정의된다. (정부기록보존소 편, 『기록보존용어사전』) 쉽게 풀이하면 “기록물에 대한 종합적 기술이 되어

만석 관련 기록물에 대한 집합적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게 될 것이다.

### ① 기록물군에 대한 집합적 기술

: 정만석에 대한 소개, 기록물 전체의 윤곽.

정만석은 1758년에 태어나 1834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생전에 그는 여러 차례 암행어사로 나갔다. 1805년 동래(東萊)부사 때는, 뇌물을 받고 쓰시마섬 [對馬島]과의 통신서계(通信書契)를 위조한 역관(譯官)을 죽인 일도 있었다. 형조참판·우승지·좌승지 등을 역임하다가, 1810년 무주(茂朱)에 유배되었다.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일어나자 평안도관찰사로 피폐된 민생을 잘 수습하여 생사당(生祠堂)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한성부 판윤, 호조, 병조, 공조, 이조, 형조 판서를 역임하고, 1829년 우의정에 올랐다가 이듬해 중추부판사로 전임하였다. 아들이 없어 양자를 들였으며, 詩會를 통해 문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갖기도 하였다.

정만석 관련 고문서 전체는 기록물군으로 묶었으며, 그것은 다시 人事關聯文書, 財産關聯文書, 家族關聯文書, 社會活動文書, 政治活動文書 등의 하위 군으로 나누었다. 1766년부터 1831년까지 작성된 고문서는 모두 〇〇점<sup>49)</sup>에 이른다.

### ② 하위 군에 대한 집합적 기술

: 각 하위군의 특성, 하위군 내의 시리즈 개관

人事關聯文書는 정만석이 평생동안 역임한 관직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敎書, 有旨, 封書, 敎旨 등의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다. 모두 26점에 이른다. 財産關聯文書는 정만석의 재산 변동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들이다. 토지문기, 노비문기, 녹패 등의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다. 모두 〇점에 이른다. 家族關聯文書는 정만석의 가족사항이나 변동사항을 알려주는 문서들로, 준호구, 입후성문 등의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다. 모두 〇점에 이른다. 社會活動文書는 정만석의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들로, 통문, 제문 등의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다. 모

---

있으며, 검색에 편리하도록 만든 목록" 정도의 뜻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만들 목록집들은 이런 '인벤토리' 형태를 따라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49) 가상의 자료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숫자를 명기할 수 없다. 아래도 마찬가지다.

두 ○점에 이른다. 政治活動文書는 정만석이 행했던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 등과 관련되는 문서들로, 상소, 장계 등의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다. 모두 ○점에 이른다.

### ③ 시리즈에 대한 집합적 기술

: 각 시리즈의 성격 기술, 시리즈 내 문서 개관.

인사관련 문서군에 속하는 시리즈에는 敎書, 有旨, 封書, 敎牒, 敎旨 등이 있다. 敎書는 국왕이 발하는 명령서<sup>50)</sup>이다. 교서 시리즈에는 문서가 세 편 들어 있다. 有旨는 승정원의 담당 승지가 왕명을 받아 그 내용을 작성하여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왕명서이다. 有旨 시리즈에도 문서가 세 편 들어 있다. 封書는 국왕이 宗親이나 近臣에게 내리는 私書(비밀스러운 글)이다. 봉서 시리즈는 한 점 있다. 敎牒, 敎旨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려주는 문서이다. 敎牒, 敎旨시리즈에는 모두 19편이 들어 있다.

## 3) 기록학적 방법론 적용의 한계와 극복 방안

### (1) 고문서의 특성에 따른 이론 적용의 문제점

고문서 자료의 출처를 “생산자 중심”으로 할 것이냐, “소장자 중심”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외에도, 생산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출처가 문제될 수 있다. 토지매매문서나 노비매매문서같은 점련문서들의 경우, 그것이 이상적인 상태로 보존된 매매문서라면, A가 B에게, B가 C에게, 다시 C가 D에게 팔아 넘긴 모든 매매 문서가 순서대로 붙어 있어서, 매매의 경과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럴 때는 출처나 원질서를 정확하게 지켜주어야 문서를 통하여 경제적인 흐름이나 사회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자료로서의 가치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덩어리로 묶여있는 매매 문서나 점련문서의 경우, 최종 보유자

50) 이하 각 고문서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최승희의 정의를 따랐다.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를 중심 출처로 해서 정리, 기술하되, 문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수적으로 기록해 두어서, 추후에 서로 연계시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편지처럼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을 경우, “소장자”(보통은 수신자)를 출처로 정리하되, 관련된 사람(보통은 발신자)은 역시 연계시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 ② 기존 자료집의 활용을 위한 전산화

“출처별”이라는 개념이 자료를 반드시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 자료집을 전산화된 목록으로 정리하거나, 검색 도구를 제작할 때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해서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자료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전산화는 기존의 자료집을 기록학 이론에 맞도록 변형시켜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입수하는 자료들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전산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칭이나 제목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문서 명칭 및 제목의 표준화는 전산화뿐만 아니라, 모든 검색도구를 만들 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sup>51)</sup> 낱낱의 고문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고문서의 내용을 최대한 드러내 주면서도 너무 길지 않고, 다른 고문서 제목들과 비교할 때 통일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는 통일된 제목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고문서의 제목은 고문서의 주인공과, 핵심적인 사항, 문서의 종류, 작성연대가 드러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인물, 후

51) 앞의 논의에서 시리즈 제목을 교지, 교서, 봉서, 유지 등으로 명명하였지만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편의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 실제로 아직도 고문서 명칭이나 종류에 대한 완전한 표준이 제시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관련 학계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은 기관+핵심 내용<sup>52)</sup>+문서 종류+작성연대>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정만석을 1766(영조42)년에 將仕郎에 임명하는 教旨는 “정만석 將仕郎 교지(영조42)”; 1806(순조 6)년에 東萊都 護府使직에 임명하는 教旨는 “정만석 東萊都護府使 教旨(순조6)”; 1821(순조21)년 龍驤衛大護軍으로 임명한 教旨는 “정만석 龍驤衛大護軍 教旨(순조21)”로 제목을 붙이면 되리라고 본다. 이 경우 작성연대는 국왕의 명칭을 밝힘으로 해서, 문서 발급자까지 나타내 주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인사관련문서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1815(순조15)년에 戶曹判書로서 받은 祿牌는 “정만석 호조판서 녹패(순조15)”로, 1816(순조16)년의 準戶口는 “정만석 준호구(순조16)”로 붙여도 될 것이다.<sup>53)</sup>

---

52) 관직 임명같은 경우는 핵심 내용이 쉽게 드러나지만, 경우에 따라 고문서 내용 전체를 다 보아야 하는 것들도 있고, 다 보았다고 해도 한두 단어로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핵심 내용이 여럿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핵심내용’ 항목은 다소간 융통성과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53) 문서의 명칭은 노명호의 작업에서 시사받은 바 크다. 노명호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제목을 다르게 만들어 붙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제목이 지나치게 길지 않으면서도 내용을 어느 정도 나타내 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教書, 功臣文書類의 제목은 수취자+발급목적+문서양식(鄭光道 褒獎 教書: 정광도를 포상하는 교서), 人事文書의 제목은 수취자+문서 성격 및 양식(李子脩 洪武九年 朝謝牒: 이자수에게 홍무 9년에 조사를 발급하는 첩), 財產關聯文書는 許與 및 분집자+가산+처분의 종류+문기(辛氏姊妹 奴婢 分執 文記: 신씨 자매가 노비를 나누는 문기), 소지나 입안은 소지제출자+양식명(張戰妻 辛氏 宣德二年 所志: 장전의 아내 신씨가 선덕 이년에 올린 소지) 등)

#### 4. 결 론

이제까지 고문서 정리,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既刊 자료집을 통해서 살펴보고, 고문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리, 기술에 대한 서구의 기록학적 방법론을 살핀 뒤, 그것을 정만석의 고문서 자료에 대해 적용시켜 보았다. 그리고 출처의 원칙에 따른 “개인별, 집안별 정리”와, 그렇게 묶은 자료들을 계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갖는 효율성, 체계성,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준화, 전산화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이미 간행된 고문서자료를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미 간행된 자료,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 발굴될 고문서까지도 포함, 고문서 전체에 대한 정리 기술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비록 기록학의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서 논의를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고문서 정리, 기술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 비록 서구의 이론이기는 하지만 기록학 이론을 우리의 기록물 정리 기술 현장에 일단 도입해서 적용시켜보았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록물 정리 기술 이론의 개발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 등은 본 논문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논문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우리의 고문서 자료를 다루는 데 서구의 기록학에서 발전시킨 개념을 별다른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 적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고문서 자료 전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였기 때문에, 논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여전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문서 자료에 대한 기술(記述)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도 한계로 남는다. 그에 대

한 논의는 ISAD(G)나 EAD 등 서구 기술 이론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뒷받침된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또, 역사나 문화 전통상 공유할 만한 유사성이 있는 동양 삼국의 고문서 자료를 함께 다루지 못하여, 상호간의 비교 검토를 통한 보편적인 논의를 전개시키지 못한 점이 이 논문이 갖는 또다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들은, 고문서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등 관련 학계와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각 대학 등 관련 기관, 그리고 모든 관련 학자들이 대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 알맞은 이론을 도출해내고, 여기에 정부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 참 고 문 헌

- 서울대학교 규장각, 『古文書』 1-23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古文書集成』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1972.  
국사편찬위원회, 『고문서목록』, 1993.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 고문서 목록』, 2000.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정부기록보존소 편, 『기록보존용어사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藤本 篤, 『古文書 入門』, 柏書房株式會社, 1994 .  
高橋 碩一 編, 『新編 古文書入門』, 河出書房新社  
安藤正人, 『記録史料學と現代』, 吉川弘文館, 1998.  
노명호 외,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윤병태 외, 『한국고문서정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허홍식, 『한국의 고문서』, 민음사, 1988.  
F. Miller,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S.A.A 1990. (조경구 역, 진리탐구, 2002.)  
SAA, *A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 Managers*, 1992.  
T. R. Schellenberg, *The Management of Archives*, 1965.  
T. R. Schellenberg, *Modern Archiv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이원영 역, 진리탐구, 2002.)  
Ernst Posner, "Some Aspects of Archival Development Since the French Revolution", *A Modern Archives Reader*, 미국립기록관리청, 1984.  
Lucas, "Efficient Finding Aids", *A Modern Archives Reader*, 미국립기록관리청, 1984.

- 김동욱, 「고문서의 양식적 연구 서설」, 1967.
- 김동욱, 「이조 고문서의 분류에 대하여」, 『古文書集眞』,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2.
- 김약술, 「古文書論考」, 『국회도서관보』 제 8호, 1967.
- 김정근, 「고문서의 K.D.C.에의 접근」, 1986.
- 김정근, 「고문서의 분류와 그 전개」, 『창랑 정필모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1990.
- 김정하, 「역사기록물에 대한 고문서학 -고서체학 연구 및 그 보존과 활용에 대한 기록관리연구」, 『고문서연구』 16.17집, 2000.
- 김현영, 「고문서 조사 정리에 있어서의 '현상기록'의 문제」, 『고문서연구』 11집, 1997.
- 남권희, 「기록물의 서지기술 동향」, 「고문서 정리 표준화안」 공청회 발표요지, 2002.
- 박병호, 「고문서 자료의 수집 정리문제」, 『정신문화연구』 15-1, 1992.
- 백 린, 「고문서의 연구와 그 정리문제」, 『국회도서관보』 제4호, 1964.
- 서경호, 김문식, 연갑수, 「규장각 소장 자료의 전산화 방안과 현황」, 『규장각』23, 2000.
- 서혜란, 「기록물 기술의 표준화」, 『기록학연구』 창간호, 2000.
- 안승준, 「고문서 조사 수집 및 정리와 그 실제」, 한국고문서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1.
- 안승준, 「최근의 고문서 조사 정리 현황과 분류방법의 문제」, 『고문서연구』 11집, 1997.
- 양진석, 「규장각 소장 고문서 자료의 현황과 활용」, 규장각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2.
- 옥영정, 「古文書 分財記의 목록작성 방향설정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20, 2000.
- 이남희, 「디지털 시대의 고문서 정리 표준화」, 「고문서정리 표준화안」 공청회 발표요지, 2002.
- 이춘희, 「고문서의 유형별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제6집,

1984.

이해준, 「고문서의 분류체계」, 「고문서 정리 표준화안」 공청회 발표요지, 2002.

이해준, 「지방 고문서의 조사 수집과 과제」, 『고문서연구』 11집, 1997.

전경목, 「박물관에서의 고문서 수집 전시」, 한국고문서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1.

정구복, 「고문서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정신문화연구』 46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정진영, 「고문서 정리카드와 기술규칙」, 「고문서 정리 표준화안」 공청회 발표요지, 2002.

하혜정, 「古書 古文書 分類編目을 위한 套式 研究」, 『동양고전연구』 14, 2000.

## Abstract

### An Archival Study on the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Old Document(Diploma)

Cho, Kyung-Koo

An Old document(Diploma) is a historical and unique record, so it must be collected, arranged, and preserved for research as soon as possible. Especially, for the effective use of the Old Document(Diploma), it is needed to arrange and describe the material systematically on the ground of modern archival theory.

The Kyujanggak Archives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published 23 volumes of Old document(Diploma) material Old Document(Diploma). But they seem to cause the readers inconvenience, because the materials are classified and gathered only by genre, the titles or the orders of the materials are not standardized, and there is no description about the content of each Old document(Diploma). Jangseo-gak Library i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as also published the series of Old document(Diploma) material Old Document(Diploma) Collection. However the case is not different, since they are all mixed up with materials classified and gathered by genre, family, academy, or local school. And a great part of the materials have no titles and no description about the content of each Old document(Diploma), either.

About the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the records, European and American archival science has established the theory of 1)the principle of provenance, 2)the principle of original order, 3)levels

of control, 4)collective description. These theories are valuable for the effective use of Old document(Diploma). On the viewpoint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Old document(Diploma) materials should not be classified by subject and genre, but by family and person. Then, the Old document(Diploma) materials, after collected by the unit of family or person on the viewpoint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should be arranged in their original order for more detailed arrangement and furthermore, for the work to find their relationship. This is so called the principle of original order. The hierarchical management of the Old document(Diploma) materials, for example, classifying by record group, sub-group, series, item and so on, is the concept of the levels of control, and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the each hierarchical structure is the concept of the collective description.

Let's apply these archival theories to 34 pieces of the Chung, Man-Seok's material in the series of Old document(Diploma) material Old Document(Diploma). First, collect the Old document(Diploma) materials into Chung, Man-Seok's collection(the principle of provenance), which were scattered in the series classified by genre. Secondly, rearrange them chronologically(the principle of original order), and then we can find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Chung, Man-Seok. For the hierarchical management of the Old document(Diploma) materials, we should establish a few concepts from the general, large group to specific, small item. The concepts can be organized as following; 1)record group(Chung, Man-Seok record group) - 2)sub-group(personnel document, property document, family document, social activity document, political activity document, etc) - 3)series(gyoji-series, gyoseo-series, yuji-series etc. in the personnel document) - 4)folder(document with additions) -

5)item(one document). According to the the theory of the collective description, in the level of record group, there should be a collective description of Chung, Man-Seok's biography or a summary of record group. Similarly, there should be a collective description of a summary of sub-group in the level of sub-group and a summary of series in the level of series.